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격이 부인된 노동조합이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Electrial, Elctronic, Telecommunication and
Plumbing Union v. Times Newspapers Ltd. and Others (1980) 1Q. B. 585
(1980) 1Q. B. 585

사실개요

원고인 전기, 전자, 전신, 배관 노동조합은 1977. 11 21 로 「The Times」신문사가 위 노동조합을 비방하는 두개의 기사를 실어 1977. 11.18. 신문에 보도하였음을 이유로 법원에 피고인위 신문사와 편집이자 및 기자를 상대로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임시로 그 기사의 보도를 금지하는 가처분신청을 하였다.

소상진술 후 피고의 신청에 의하여 1979. 10. 6 자로 위 사건에 관한 변론진행 전에 미리 해결되어야 할 3 가지 전제문제가 제출되었다. 즉,

(1) 특별히 당국에 등록되지 아니한 노동조합이 그 구성원과는 별도로 그 자신의 이름으로 하나의 법적인 실재로서의 명예에 관련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가?

(2) 만약 제기할 수 있다면 그러한 소송은 그조합의 재산에 대한 손해의 입증이나 그 조합이 겪은 특별한 손해에 대한 입증의 여하에 의하여 좌우되는가?

(3) 위와 같은 노동조합은 그 구성원들을 전혀 특정하지 아니한 채 그 구성원 모두를 대리하여조합의 이름으로 어느 보도가 그들 구성원들의 여러가지 명예를 훼손하였다 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그것인데, 그 중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재판에 회부된 것은 (1)과 (3)의 2 가지 전제문제였다.

피고측 대리인의 진도

노동조합은 1974. 경부터 시행된 「노동조합 및 노동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비록 그 조합의 불법적인 행위가 있다 하더라도 광범한 범위내에서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소승을 당하는 것으로부터 면실되게 되었다. 이 사건에 있어서 전제문제 (1)은 노동조합이 위 입법의 덕택으로 스스로는 불법행위책임을 지지 아니하면서 타인에 대하여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 일방적인 권리만을 취득하게 되었는가 하는 문제이다.

위 법률 제 2 조 제 1 항의 의의는 노동조합에게는 아무런 법적인 인격도 부여되어 있지 않음을 명백히 하는데 있다고 볼 수 있다. 법원은 더 이상 과거에 전통적으로 취급했듯이, 노동조합을 유사법인으로 간주할 수는 없게 되었고, 따라서 노동조합은 이제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유사법인은 오로지 실정법에 의해서 법인의 특징이 주어질 때 비로소 인격을 갖출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인격의 구비 여부는 사건마다 그 집합체를 창조하거나 규율하는 법률의 해석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원래 법인격이 없는 집합체가 그 자신의

권리로서 명예훼손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은 이와 같은 유사법인의 지위를 취득했을 때 비로소 가능한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명예훼손을 당할 인격이 없기 때문이다.

Kidner 는 그의 저서인 1979 년판 「노동조합법」의 26 면에서 1974 부터 시행된 「노동조합 및 노동에 관한 법률」하에서의 노동조합의 법적인 지위에 관하여 정확하고도 유력한 해석을 제공하고 있다. 즉, 그에 의하면 위 법률의 핵심조항인 제 2 조 제 1 항의, 「····법인으로 되거나, 마치 법인인 것처럼 취급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문구는 통상적이고도 자연스러운 의미에서 풀이되어야 하는데, 위 조항은 법인과 비법인 집합체의 어느 한 형태를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정한 사용이자집합체에 관한 제 3 조 제 1 항의 규정과 대조를 보이고 있다.

위 법률 제 2 조 제 1 항 C 목은 노동조합이 대표소송을 할 때의 어려움을 없애기 위하여 조합 자신의 이름으로 소송을 하거나 소송의 상대방이 될 수 있다는 절차법적인 면을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서, 그것은 결코 노동조합이 인격체라는 실체적인 면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상호성이라는 면에서도 위 조항은 「제 14 조에 따라」 소송을 제기하거나 소송의 상대방이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결국 노동조합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능력은 소송의 상대방이 될 수 있는 능력범위와 일치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데, 노동조합은 명예훼손으로 인한 불법행위소송의 상대방이 될 수 없으므로 스스로 그 소송을 제기할 수도 없게 되는 것이다.

원고측 대리인의 진술

Times 신문의 보도에 의하면 노동조합에 의하여 최초로 제기된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은 1913. 11. 경이 된다. 그때 이후부터 1966. 2. 4. 자 Times 신문에 보도된「British Airline Pilots Association v. Daily Sketch and Daily Graphic Ltd.」사건에 이르기까지 노동조합은 끊임없이 그 자신의 이름으로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분쟁을 해결하여 왔다. 그래서 1913 년경부터 법조계, 언론계, 노동조합의 세계 등에서는 노동조합이 그 자신의 명예에 대한 훼손이 있을 경우에는 스스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게 되었다.

그리고 1974 년도의 위 법률의 핵심조항인 제 2 조 제 1 항의, 「····법인으로 되거나, 마치 법인인 것처럼 취급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문구가 있다 하여 종래 보통법에 내재한 원칙에 따라 노동조합에게 유사법인의 지위를 부여하여 온 해석이 달라진다고 볼 수는 없다. 그것은 위 문구는 노동조합은 법인으로 취급되어서는 아니 되고, 또한 완전한 의미에서의 법인도 아니라는 점을 밝히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입법자는 류사법인이 아니면 부여될 수 없는 여러 가지 권능을 위 조항 (a)목에서 (c)목에 걸쳐 규정하여 노동조합에게 부여하고 있는 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위 제 2 조 제 1 항은 노동자들의 조직인 노동조합은 법인이 아니고 또한 법인으로 취급되어서도 아니 됨을 선언하면서, 그러나 그것은 비법인 단체로서, 보호 받아야 할 명예를 충분히 향유하고 있는 유사법인의 지위를 노동조합에게 부여하고 있는 것이다.

전제문제 (3)은 노동조합이 소송을 제기함에 충분한 인격을 갖추지 못하고 있고, 단순히 그 조직은 개개 구성원들의 집합체에 불과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경우에 일어난다.

절차법적으로도 그러한 구성원들의 집합체는 소송을 제기할 수가 있다. 위 1974 년도 법률의 제 2 조 제 1 항 c 목이 없었다면 이와 같이 방대한 개인들의 집합체가 일반 민사소송절차에 따라 대표소송절차를 밟는 것은 매우 어려웠을 것이나, 위 제 2 조 제 1 항 c 목의 덕택으로 이러한 어려움은 사라지고 개인들의 집합체는 조합의 이름으로 가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가 있게 될 것이다.

피고측 대리인의 답변

원고측 대리인은 위 법률 제 2 조의 핵심문구인「마치 ····인 것처럼 (as if it were)」이라는 구절을 전혀 해석에 포함시키지 않거나 생략하고 위 조항을 풀이하려고 한다.

이 구절의 목적은 구노동조합법 중 노동조합측의 입장에서 보아 호감이 가지 않던 요소들을 삭제해 내는 데 있는 것이다. 즉 위 1974 년도 법률의 위 조항을 합리적으로 해석하면 위 제 2 조제 1 항의 목적은 노동조합으로부터 법인으로서의 인격이나 유사법인으로서의 인격을 모두 박탈하는 데 있음이 명백하고, 따라서 노동조합은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결과는 조금도 불합리하지가 않다. 그 이유는 조합은 위 법률에 의하여 위와 같은 불법행위에 대하여 면책되도록 되었기 때문이다.

전제문제 (3)(대표소송문제)는 부정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첫째, 그것은 비방을 받은 개인들은 전혀 특정하지 아니한 채 한 집단에 대한 명예훼손이라는 형태를 띠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법제도상 인정되지 않는 바이고, 둘째, 비록 위 법률 제 2 조 제 1 항 c 목에 의하여 절차적으로는 대표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할지 몰라도, 구체적으로 이 사건과 같은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온당치 않기 때문이다.

O'Connor 판사

우선 이 사건의 전제문제는 노동 내지 산업상의 분쟁이 아니라 명예훼손으로 인한 분쟁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Denning 항소법원 판사가 「Bonsor v. Musicians' Union(1954)」사건에 관한 그의 少수의견에서 밝혔듯이 명예훼손은 원래 사람에 대한 위법행위이지 재산에 대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노동조합이 그 자신의 이름으로 위 소송을 제기할 수 있기 위하여는 위 조합에게 법적인 인격이 부여되어 있어야 함은 명백하다. 그 가장 좋은예는 자발적인 비법인 단체는 그 자신이 명예훼손으로 인한 그 어떠한 소송도 제기할 수 없다는 법리가 확립되어 있는 소에서 찾아 볼 수가 있다. 위 집단에게는 명예훼손을 당할 아무런 인격이 없기 때문이다 자연인이나 법인, 조합에게는 위 소송의 제기에 아무런 어려움이 없다.

그러나 비법인 단체에 있어서는 법률의 규정이나 정부의 허가에 의하여 소송에 의하여 보호될 가치가 있는 충분한 인격이 부여되어 있지 않는 한, 그 자신의 이름으로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가 없는 것이다. 여기에서 단체에 대한 명예훼손의 문제를 살펴보기로 한다.

어느 단체에 대한 명예훼손적인 말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구성원은 그 말이 자기 자신에 대한 것임을 입증하지 않는 한, 스스로 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한 사실이다. 예컨대, 모든 변호사는 악당이라는 말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 나라의 어느 변호사이든 명예훼손으로 인한 소송을 제기할 수가 없는 것이다. 다만 구체적인 상황에 비추어 그 말은 어느 개인을 특정하여 그에게 향한 것이라는 점을 입증 할 수 있다면, 그 개인은 소송을 제기할 수가 있겠지만 말이다. 그러면 노동조합은 어떠한가?

1871 년 노동조합법의 제정으로 노동조합은 합법화 되었으나, 그것은 비법인 단체였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할 수도 제기당할 수도 없었다. 그러다가 1901 년도 「Taff Vale Railway Co v. Amalgamated Society of Railway Servants」사건에서 귀족원은 노동조합은 민사소송의 피고가 될 수 있는 충분한 인격을 갖추고 있다고 판시하였다. 이 판결은 거꾸로 말하면 노동조합은 스스로 원고가 될 수 있는 인격도 갖추고 있음을 뜻하는 것이 될 수도 있었다.

그러자 국회는 노동계의 여론을 수렴하여 1906 년에 위 판결내용을 번복하는 내용의 입법, 즉 노동조합은 불법행위에 있어서 면책된다는 내용의 법률을 제정하였다. 다만 위 법률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이 스스로 원고가 되어서 불법행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위 귀족원의 판시는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었다. 그래서 원고측 대리인이 말한 바와 같이 1913 년부터 노동조합이 원고가 되어 소송을 제기한 것이 상당수에 이르게 된 것이다.

그런데 문제가 된 1974 년 「노동조합 및 노동에 관한 법률」 제 2 조는 「노동조합의 지위」라는 방주하에 「특별히 등록되지 아니한 노동조합은 법인이 될 수도 없고, 마치 법인인 것처럼 취급되어서도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매우 명확한 규정이라고 생각된다 즉, 이 구절은 1901 년부터 1971 년까지 노동조합에 부여되어왔던 지위를 박탈하는 문구라 할 것이다.

그리고 나아가 위 조항은, 「그러나 (a)노동조합은 계약을 맺을 수가 있다. (b)노동조합에 속하는 모든 재산은 그 조합을 위한 신탁재산에 귀속되게 된다. (c)제 14 조에 따라서 노동조합은 그 스스로 민사소송의 원고가 될 수도 있고 피고가 될 수도 있다. (d)노동조합에 의하여 저질러졌다고 주장되는 위법행위에 대하여는 그 노동조합 자신을 상대로 소송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 (e)노동조합을 피고로 한 판결 등의 채무명의는 마치 위 조합이 법인인 경우와 마찬가지로 집행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a)에서 (e)까지의 구절은 만약 「마치 법인인 것처럼 취급되어서도 아니 된다」는 문구가 없었다면 노동조합에게 유사법인의 지위를 부여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위의 「마치 법인인 것처럼 취급되어서도 아니 된다」는 문제의 문구가 삽입되어 있는 만큼 노동조합에게 유사법인의 지위를 부여할 수는 도저히 없는 것이다. 이는 사용이자조합에 관한 위 법률 제 3 조 제 1 항과의 규정의 차이에서도 명백히 알 수 있다. 즉, 사용이자조합의 경우는 법인인 경우와 비법인 단체인 경우의 2 가지로 나누어 후자의 경우에는 다시 노동조합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위 (a)에서 (e)까지의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이다.

노동조합이 불법행위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것이 곧, 그것은 명예훼손으로 인한 불법행위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단순히 노동조합이

불법행위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것은 어디까지나 절차법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명예훼손으로 인한 불법행위소증을 제기할 수 있기 위하여는 전술한 바와 같이 인격을 소유하고 있어야 하는데, 위 제 2 조 제 1 항은 노동조합으로부터 인격을 박탈하여 버렸기 때문에 위 소송을 제기할 수가 없는 것이고, 이는 위 조문의 체제상 명백하다 할 것이다.

이와 같이 전제문제 (1)을 부정적으로 답할 수 밖에 없다면, 전제문제 (3) 또한 답하여야 하는데, 이것 역시 부정적으로 답하여야 한다. 그 이유는 50 명, 500 명 또는 50 만 명의 서로 다른 수많은 사람들의 각기 서로 다른 내용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위한 대표소송은 불가능하여 도저히 허용될 수가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부술설명하고 싶은 것은 노동조합이 명예훼손으로 인한 불법행위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해석은 위 법률 제 14 조에서 노동조합에게 불법행위책임의 면제를 규정하고 있는 반면에서 나오는 결론이 아니라는 점이다. 불법행위책임은 면제시켜 주면서 그 손해배상청구권을 부여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한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사건 2 개의 전제문제는 모두 피고측의 주장과 같이 부정적으로 판단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된다.